

-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 -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나. 의안번호 : 제1006호

다. 제출일자 : 2016. 2. 11.

라. 회부일자 : 2016. 2. 15.

## 2. 제안사유

가.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대행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일부 평면식 주차장 16개소에 대해 제3자 위탁(재위탁)을 시행하기 위하여,

※ 평면식 주차장 : 非건물식 주차장으로서, 별도 부지 또는 도로가에 설치된 주차장

나.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※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(재위탁)시 시의회 의결절차 미이행 지적(2015년 행정사무감사)

### 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서울시 공영주차장 재위탁(제3자 위탁)

나. 위탁기간 : 1년

다. 계약방법 : 협약

라. 대상주차장 : 총 16개소 328구획

연번	주차장명	급지	구획수	수탁 운영자	위탁 개시일	연번	주차장명	급지	구획수	수탁 운영자	위탁 개시일
1	성북초등교	2 (노상)	26	성북구도시 관리공단	08.01.01	9	망원동	4 (노외)	13	마포구시설 관리공단	13.11.01
2	올림픽대교 북단	3 (노상)	18	광진구시설 관리공단	08.01.01	10	목동노외	3 (노외)	48	양천구시설 관리공단	13.11.01
3	신사동 향년회관	3 (노상)	28	은평구시설 관리공단	08.02.11	11	마곡동	2 (노외)	27	서대문구도 서관리공단	13.11.01
4	관철동	1 (노상)	7	관철동문화 발전위원회	09.12.21	12	월계역	4 (노외)	40	노원구서비 스공단	13.11.01
5	남산소파길	2 (노상)	15	남산상인연 협회	09.06.01	13	중계로	3 (노상)	7	서대문구도 서관리공단	13.11.01
6	종암1동	3 (노외)	21	성북구도시 관리공단	11.11.01	14	청계8가	1 (노상)	19	중구시설 관리공단	14.01.01
7	개봉역북단	3 (노상)	11	구로구시설 관리공단	13.11.01	15	청계5가	1 (노상)	13	평화시장주 식회사	14.03.01
8	광운대입구	4 (노외)	18	성북구도시 관리공단	13.11.01	16	영등대교북단	1 (노상)	17	성동구도시 관리공단	14.10.01

마. 제3자 위탁(재위탁)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사업 중 일부 소규모·평면식 주차장은 전문적 관리 필요성이 적고,
  - 자치구(산하 공단)에 재위탁으로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하거나 시장 관리자(상인회) 재위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
    - ▶ 자치구 공단 재위탁 : 13개소(성북초등교, 올림픽대교북단, 신사동 등)
    - ▶ 상인회 재위탁 : 3개소(관철동, 남산소파길, 청계5가 등)
- \* 전통시장 인근 100m 이내, 주차면수 20면 이하인 주차장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~ ④ 생략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 생략
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
② ~ ③ 생략

### 나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■ 동의안의 개요

-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이라 한다)이 서울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16개 주차장에 대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및 시장상인회 등의 제3자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### ※ 참고 :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관련 규정

제19조(대행사업)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■ 검토의견

- 공단은 '16년 현재 61개 공영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1)에 따라 그 중 45개소는 공단 직영으로, 16개소는 자치구시설관리공단 및 상가연합회<sup>2)</sup> 등의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음

1) 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
2)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, 남산상인연합회 및 평화시장주식회사

## ※ 참고 : 공단의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

- ① 위탁 업무 : 공영주차장 관리·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- ② 시설 현황 : 61개소, 13,942구획
  - 직영 : 45개소 13,614구획 / 제3자 위탁 : 16개소 328구획
- ③ 위탁 기간 : 3년('14.12 ~ '17.11)<sup>3)</sup>
  - '14.12월부터 공영주차장 61개소 및 증감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·운영에 대한 협약을 통해 재계약 함
  - 제3자 위탁의 경우 위탁기간 중 기관(연합회)의 운영포기 등으로 인한 주차장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 하고자 위탁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
- ④ 수입/지출('15.9) : 19,838백만원 / 10,034백만원
- ⑤ 이용요금 :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(1~5급지 요금 부여)

-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의 제3자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대상 공영주차장(16개소)은 소규모의 거주차우선주차장 또는 주민생활 밀착형 주차장으로 전문적 위탁관리의 필요성이 적어 공단 직영시 오히려 인력운영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,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6항<sup>4)</sup>에서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

공단이 위탁받은 주차장을 자치구 산하 공단 및 상인회 등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거주차우선주차구역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현행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공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난 행정사무감사

3) 주차계획과-15327('14.11.21)

4) 제15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. 다만,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
당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시정조치 요구<sup>5)</sup>에 따라 이제야 조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는 바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

---

5) 264회정례회 1차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('15.11.12)